



	<b>Chap6.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b> <b>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b>	<b>대법원 2026. 1. 29. 선고</b> <b>2022후10722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b>
<b>제목</b>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b>판시사항</b>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균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b>판결이유</b>	<p>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p> <p>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p> <p>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등 참조).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p>	

##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균등침해 판단요건 중 '작용효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
-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함께 해결한다면
  - 원칙적으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확인대상 발명에 추가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 그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 채택에 따른
  -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경우
  - 작용효과 동일성은 부정되지 않음을 명시
- 작용효과를 세분화하여 균등을 부정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작용효과 동일성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

## (2) 사안개요

- 사건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
- 당사자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OOO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 대상 특허발명



- 마스크에 관한 발명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된 밀착공부
  - 밀착공을 통해 걸이끈을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결합
- 확인대상 발명
  -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 밀착공부를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
  - 걸이끈을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결합
- 쟁점
  - 문언침해 부정 이후 균등관계, 특히 작용효과 동일성 인정 여부

### (3) 법리

#### ① 청구범위 해석 법리

- 특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 문언에 의하여야 함
- 발명에 관한 설명·도면 등으로
  - 청구범위를 확장·축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 문언의 기술적 의미는
  - 발명에 관한 설명·도면을 참작하여
  -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② 균등침해 및 작용효과 동일성 법리

- 균등침해 요건
  - 과제 해결원리 동일
  -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 가능
  - 특별한 사정 없음
- 과제 해결원리 판단
  - 명세서 기재 + 출원 당시 공지기술 참작
  - 특히발명에 특유한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
- 작용효과 동일성 판단
  -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 특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함께 해결하면
    - 원칙적으로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
  - 다만
    - 특히발명의 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된 과제에 불과한 경우
    - 변경된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역할을 비교

### (4) 특히법원(원심법원) 판단

-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미 차이를 이유로



-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나아가
  - 차이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도 나타내지 않음
- 따라서
  - 균등관계 부정
  - 권리범위 불속

#### (5) 대법원 판단

- 청구범위 해석 및 문언침해 부정 판단은 정당
- 그러나 **작용효과 동일성 판단은 위법**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과제
  - 마스크 구조를 간단화
  -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 선행발명 2 등에서는
  - 밀착공부를 중앙덮개부에서 일체로 연장 형성하는
  - 해결수단이 제시되지 않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
  -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 연장된 밀착공부
  - 걸이끈 결합·조절 구조의 통합
- 확인대상 발명도
  - 위와 같은 구성 채택
  - 동일한 기술과제 해결
- 따라서
  - 과제 해결원리는 동일
  -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동일 과제 해결 →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
- 확인대상 발명의 추가 효과
  - 착용감 향상
  - 제조공정 간이화 등
- 이는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 채택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
  - 실질적 작용효과 차이 아님
- 결론
  - 원심은 균등침해 법리를 오해
  - 파기환송

#### (6) 결론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
- 균등관계(특히 작용효과 동일성)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

**(7) 한줄 키워드 요약**

-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함께 해결하면, 부수적 효과 차이가 있더라도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8) 추가 정리 포인트**

- 작용효과 동일성은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을 전제로 판단
- 효과를 지나치게 분해하면 균등침해 판단에서 법리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 모두에 동일한 기준 적용